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휴무 토요일임에도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욕 내지 책임감에서 기인한 것일 뿐 달리 사적인 목적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출발에서부터 복귀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특별히 순위를 벗어났다거나 방문 목적을 벗어난 행위도 발견되지 않고 출장 승인절차 등 형식적인 요건을 결하였다고 하여 방문목적부터 방문기간 중의 실제 행위 등에 있어서 실제적인 업무관련성을 살펴보기 어렵고 업무상 출장의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만을 가지고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판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재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해놓은 출장 중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3)

회사의 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휴무일에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입무를 처리하고 복귀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사례

재해자는 00전력공사에 총무과장으로 인사, 노무, 자재관리, 계약업무 등을 담당해 오다가 휴무일에 업무상 사유로 택시를 방문하고 회사로 복귀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피재자가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출근 중 재해가 아니며 토요일

격주휴무일에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임의로 방문하였고 방문목적 업무상 불가피하고 긴박한 사실이 없었으며 업무상 출장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증언이 전혀 없어 사적인 행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이에 결정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피재자가 업무처리 방식의 관행상 회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된 미결사항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방문이었다고 보여지며 회사에 사전 출장계획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민원인을 방문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한·방·상·식

의정부 수 한방병원 병원장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승재**



스테미너 부족일 때는 부추생즙을 사과즙이나 청주에 섞어 잡자기 전에 복용하고, 부추즙에 식초를 조금 섞어 살짝 끓여 복용하면 간 기능 강화에 효과적이다.

또 녹차를 즐겨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다. 차는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에 좋으며 각성작용과 해독작용이 있어서 숙취를 푸는데도 그만이다. 그리고 위(胃)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욕을 촉진하고 위를 따뜻하게 하며 간(肝)에 작용하여 간의 열을 제거하고 가슴이 답답한 것을 풀어주며 활동을 좋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

봄철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보약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때엔 인두도 못 낼 일이다. 그렇지만 예로부터 식보(食補)란 말이 있지 않은가? 음식을 잘 먹으면 보약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여유롭게 마시는 따뜻한 차 한잔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보도록 하자.

☞의정부수한방병원(031-820-7200)www.ljherberg.co.kr

보약없이봄철 나기

이때는 약의 성분이 찬 약으로 구성된 처방들을 많이 사용한다. 소시호탕, 인진오령산, 황련해독탕 등은 모두 간장의 습독을 빼 주는 좋은 약들이다. 일단, 간장의 습열 독을 풀어 준 후에 간장을 보호해 주는 치료 방법이 절해져야 할 것이다.

피로감이 쌓이는 이유 중에는 또 하나는 신장의 기능실조를 들 수 있다. 신 기운이 허하면, 특히 허리가 아프고 힘이 자주 부으면서 피로감이 많이 쌓인다.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신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봄철에는 특히 마음을 편하게 하며 피로를 풀어주고 스테미너를 좋게 하는 음식이 효과적이다.

봄에는 몸에 좋은 산나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는데, 그 중에서도 부추는 봄철 채소로 그만이다. 부추는 갖가지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자양 가장 작용이 아주 뛰어난 채소로 피로회복은 물론 스테미너 강화에 그만이며, 특히 간에 아주 좋다. 동의보감에서도 '간에 속하는 채소는 부추'라고 했을 정도로 부추는 간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낸다. 이밖에도 위장을 비롯한 내장 전체의 상태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피의 흐름을 좋게 하고 자율신경을 자극한다.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3내과장 **양동훈**



검사로 진단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흉부작열감, 위산 역류와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만성적으로 있다면 증만성 기침, 인두 이물감 및 인후통, 권 목소리 등과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호흡기나 혹은 이비인후과적으로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면 적절한 검사를 해보아야 한다.

흉부작열감은 가슴쓰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통상 식후 30분에서 2시간 정도에 나타나고 10분 이상 지속되지만 한번에 수 시간씩 지속되지는 않으며 재산제에 의해 조기에 완화되기도 한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반드시 식도점막의 손상이 심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내시경에서 매우 심한 역류성 식도염의 소견을 보이는 환자에서도 그 증상은 경미한 경우도 종종 있다.

☞포천병원 (031-539-9114)

위식도 역류질환 ①

위식도 역류질환이란 위 혹은 십이지장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되어 흉부작열감, 위산 역류 등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거나 식도의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서양에서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그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질환으로 재발이 흔하며,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고 위식도 역류가 지속된다면 식도협착이나 식도암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위식도 역류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유발될 수 있는데, 가슴이 타는 듯한 흉부작열감이나 위산 역류와 같은 전형적인 증상 외에도 흉통, 권 목소리, 인두 이물감 및 인후통, 만성적인 기침 및 천식과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이 유발되기도 한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식도조영술, 내시경검사, 24시간 식도산도검사 등의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저는甲에 대한 대어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인 Z이 임대인 甲과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차보증금잔금채권에 입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甲은 위 임차보증금의 종전 임차인 丙이 명도를 거절함으로써 인하여 Z에게 위 건물명도 해제를 해주지 못하게 되자, Z은 제가 법원에 신청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송달 받은 후 위 이 건물명도를 지체하는 것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 귀하와 같은 경우 압류채권과 관련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

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항변 예컨대 계약의 취소, 해제 등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임차인이 가압류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

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또한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의 효력이 실효되는 이상,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 태가 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불발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61685 판결).

위 판례에 비추어 볼때 귀하는 Z의 임대차계약해제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실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행위에 따른 성폭력 개념

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회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1) 강간(성폭행) :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는 행위로 처녀막의 손상이나 사정의 흔적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성기가 소음 순까지 닿는 경우도 강간으로 취급한다. 아내강간, 구강성교, 항문성교, 다른 물

질을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원래 형법상의 강간은 부녀자의 정조를 유린한다는 것과, 성기삽입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남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성기삽입이 없는 것은 강간이 아니라 강간미수, 강제추행이 된다.

(2) 성추행(강제추행) : 성추행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형태의 성적인 관심을 지칭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차근대는 행위나 성적인 농담 또는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성적인 이유를 하거나 빈정거리는 행위, 성적인 몸짓을 해 보이거나,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뽐내 쳐다보는 행위, 성적으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말

을 하는 행위, 허락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한다.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희롱과 구분된다.

(3) 성희롱 :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성폭력이라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 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사이버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본인 소유 아파트 2채 중 한 채를 결혼한 자녀(장남, 32세)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할 아파트는 국제정기준시가 3억원, 은행채무 1억원인 경우 증여세 등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A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가 성인으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당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채무 1억에 대하여 자녀가 인수하고 자녀

가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인수한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상환은 인수한 장남이 갚아야 합니다.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인수한 채무 1억원에 대하여는 부모가 압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증여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0조"와 "동법 시행령 제 49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보통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국제정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만, 국제정에서 결정할 때는 증

여일 전후 3개월 이내 주변의 동일한 아파트 매매가격이 확인되거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추가로 결정 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0조"의 평가의 원칙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49조"의 평가의 원칙에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일반주택이나 기타 부동산과는 달리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가 있어 증여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같은 동이나 같은 면적 및 비슷한 층수의 아파트가 최근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지를 주변의 중개사사무실 등에서 확인해보고 증여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박운중 031-872-6116

Advertisement for '아인스월드' (Ains World) featuring a world map and the slogan '하루에 즐기는 새로운 세계여행, 아인스월드!' (Enjoying a new world travel every day, Ains World!). The ad includes the company logo and the text '세계 최고 건축물 테마파크 - 아인스월드' (World's best architectural theme park - Ains World).